

영주시 공고 제2023 - 1033호

「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중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4일

영 주 시



##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, 현행 미비한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여 보완 개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4조의 2)

- (현행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(개정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나. 기금관리공무원 변경(안 제13조 제2항)

- (현행)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(개정)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.

다. 기금관리 규정 문구 변경(안 제14조 제4항)

- “영주시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, “용도로는 사용” 을 “용도로 사용” 으로 변경

라. 위원의 양성평등 위촉 규정 추가(안 제18조 제2항)

-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 추가

마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변경(안 제23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8월 24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농업정책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E-mai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- 우편 : 경북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30  
영주시장(참조 : 농업정책과장)
- FAX : (054)639-5877 송신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
- 연락전화 : (054)639-7311, 7312
- E-mail : powerkorean@korea.kr,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##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”를 “농업정책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농정기획팀장으”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영주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용도로는사용”을 “용도로 사용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농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”를 “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”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 
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수당과 여  
비에 관한 사항은 「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2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적용한다.	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
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 임명) ① (생략) ② 기금운용관은 <u>농업기술센터소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</u> 한다.	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 임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농업정책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농정기획팀장</u> -----.
제14조(기금관리) ① ~ ③ (생략)  ④ 기금관리는 <u>영주시장</u> 명의로 수탁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 이외의 <u>용도로는</u> 사용할 수 없다.	제14조(기금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④ ----- <u>시장</u> ----- ----- <u>용도로 사용</u> -----.
제18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, <u>위원장은 부시장</u> 이 되고 <u>부위원장은 당해 위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. <u>&lt;신 설&gt;</u>	제18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특정 성별이 위촉직</u> <u>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</u> <u>도록 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위원장은 부시장</u> 이 되고 <u>부위원장은 당해 위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.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농업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23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-----  
----- 농정기  
획팀장으로 한다.

제2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「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사항	
주요내용	<p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p>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견 제출자	소속 또는 주소	연락처	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